

지명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제5조 관련)

종류	제외 사항
1. 행정구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읍·면·동·리 포함)의 명칭
2. 해양지형	해양조사정보법에 따른 해양지명의 명칭
3. 교통노선	도로·철도·수로(운하 포함) 등의 교통노선 명칭
4.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체계에서의 도로명
5. 정거장	공항, 항만(어항 포함),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각종 터미널, 환승시설 및 이에 준하는 각종 정거장 시설 등의 명칭
6. 하천	국가, 지방, 소하천 명칭
7. 자연공원등	국립, 도립, 군립, 지질공원의 명칭 및 해당 명칭에 포함된 자연지명
8. 문화유산	지정문화유산(보호물,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포함), 등록문화유산, 예비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의 명칭
9. 사업구역	택지, 신도시, 주거환경정비, 도시개발,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복도시, 기타 계획적인 개발·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한 주거·산업·도시·교통·문화 등의 사업구역·지역·지구·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역(개발지역에 조성된 마을 등의 거주지역 포함한다) 등의 명칭
10. 수목원·정원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지정, 등록된 수목원, 정원의 명칭
11. 업무시설	기관·법인·단체 등의 청사·업무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명칭
12. 군사·보안시설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는 군사·보안시설의 명칭
13. 상업·유통시설	시장, 상가, 휴게소, 영업소, 유통·물류시설 등 각종 상업·영업·유통 관련 시설의 명칭
14. 기타	공공성과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